2014.

♡♥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♥♡

— 2014. 11. 24. ~ 11. 28.(5일간) —

2014년 군외면 정기 종합감사결과

완 도 군

(기 획 예 산 실)

2014 군외면 정기 종합 감사 결과

1 감사배경 및 목적

○ 면 자체예산과 재배정 예산집행, 담당별 업무처리 실태, 각종 민원 및 인·허가 처리,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점검

○ 감사를 통하여 면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면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2 감사대상 및 범위

○ **감사대상** : 군외면사무소

○ **감사범위** : 2013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처리한 면정업무 전반

3 감사중점사항

○ 예산집행과정의 적정성, 인·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법성, 지방세 과세 적정성, 각종 수입금의 세입조치 적정성, 전년도 감사 조치결과 등 중점 점검

4 감사기간 및 인원

○ **감사기간** : 2014. 11. 24. ~ 11. 28. (5일간)

○ **감사인원** : 감사담당 외 4명

5 지적사항 총괄

○ 지적건수 (단위 : 건)

계	일반 행정	환경 복지	농림 수산	세입	세출	공사 계약	건설 행정
41	4	11	9	6	6	2	3

○ 처 분 건 수 (단위 : 건, 천원, 명)

행 정 상			재 정 상				신 분 상				
계	시정	주의	계	추징	회수	기타	계	징계	경고	훈계	주의
41	23	18	47,767	41,403	3,364	3,000	16	1	1	6	8

6 분야별 지적사항(요약)

일 반 행 정 (4)

1 정보통신시스템 보안관리 소홀

○ 정보시스템 무단사용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단말기 취급관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함.

○ 그럼에도, 2013. 3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**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부여·관리하지 않아 행정정보가 유출될 소지를 초래**하는 등 보안업무 추진 소홀

2 지역발전위원회 운영 부적정

○ 관련조례에 따라 읍면장은 위원 위촉계획을 수립하여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정기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하여 회의록을 작성 3년간 보관함.

○ 그럼에도, 2013. 11. 20. 위원 임기가 종료되어 위원회를 재정비하면서 **위원 위촉 계획 미수립과 기관단체장 추천절차 없이 위원 위촉** 및 **위원장이 아닌 군외면장이 3회 회의 소집하였고,** 2013년과 2014년 4회 회의 참석 수당을 **회의개최 몇일 전 일괄집행하여 현금보관후 당일 지급**하는 등 조례가 정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함.

3 민원업무 지연 처리

○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건축민원 4건 외 3개 업무 6건 등 10건과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건축민원 4건외 3개 업무 5건 등 **총 19건 민원사무에 대하여 법정처리기한을 경과하여 처리**하는 등 민원사무업무 소홀

4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○ 관련지침에 따라 공공근로자 출석사항은 1인 3인(근로자, 작업반장, 담당 공무원)이 모두 출석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여 부정출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

○ 그럼에도, 근로자에게 **당일 출석부에 서명을 받지 않고 출석부에 도장으로 일괄 날인하여 근로자 출석여부 확인이 불가능**하는 등 업무 소홀

환 경 복 지 (11)

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 소홀

○ 매년 상·하반기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조사하여 건물, 경유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여야 함.

○ 그럼에도, 기존 부과자료만 형식적으로 조사하여 2014년 **2건 부과대상 시설이 누락됨(환경개선부담금 추정액 12천원)**

2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채용 부적정

○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20세 이상 55세 이하 신체 건강한 자로 선발하여야 함에도 **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연령초과자 2명(만56,57세)을 부적정하게 선발**

3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관리 소홀

○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은 우천 등 야외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실내에서 안전교육, 직무교육, 기타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함.

○ 그럼에도, **비 또는 눈이 내리는 날**(강수량 10mm이상 기준) **10일**에 대하여 산불예방활동을 한 것처럼 **활동일지 허위 작성**

4 공휴일 산불상황실 근무자 편성 부적정

○ 산불조심 기간 중 우천시에는 산불상황실 비상근무를 제외토록 하였음.

○ 그럼에도, **강우량 10mm 이상 비 내리는 날 8일(5명)**에 대하여 **산불상황실 비상근무**를 하는 등 **공휴일 산불상활실 근무를 부적정**하게 운영

5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증 관리 소홀

○ 반납·회수된 의료급여증은 분실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될 않도록 즉시 폐기조치하여야 함.

○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망·의료급여 중지 등 **의료급여증 회수 및 폐기 사유가 발생된 34명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업무 소홀**

6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이행 소홀

○ 매년 초 복지대상자 모니터를 위한 방문상담 연간계획을 수립하고,기초수급자는 연 1회, 신규 기초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, 그 외 보호가 필요한 자는 인지 후 1주 이내 방문상담을 실시하여야 함.

○ 복지대상자 방문상담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**방문상담 대상자120명**을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**14명만 방문상담을 실시하는 등 업무 소홀**

7 노인여가복지시설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부적정

○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조금 교부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.

○ 그럼에도, 경로복지센터(1) 및 경로당(4) 등 **5개소 운영비 보조금 정산**시 **노인회 여행비, 경조사비, 선물구입 등으로 부적정하게 집행**하고 정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**정산**하는 등 지도·감독 소홀

8 노인건강복지수당 지급 부적정 – 회수 9만원

○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건강복지수당을 월 3만원 지급함.

○ 그럼에도, 건강복지수당 중지사유인 **관외전출, 사망자 2명에게 건강복지수당 9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**함.

9 2014년 문화누리 카드사업 추진 소홀

○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에게 세대당 10만원의 금액을 카드로 적립지원하고 있음.

○ 대상자 82명 **카드사용 집행실적이 71.1%로 저조**함에도 집행률제고 소홀

10 노인일자리사업 개인정보 관리 및 대상자 선정 소홀

○ 2013년과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을 개별상담을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**대상자를 마을별 인구수 비례 부적정 선정**

○ 사업대상자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**2013년 44명과 2014년 43명**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를 87명 사업대상자 전원에게 일괄 발송 **개인정보 유출**

○ 중도포기자 및 부적격자 발생시 **이장 및 업무담당자가 대상자 임의 선정**

11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소홀

○ 도 시책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우유 또는 요구르트 등을 배달하여 말벗 및 만일에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생활상황을 살피고 있음.

○ 대상자 23명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**사업비 2,070천원을 집행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**

농 림 수 산 (9)

1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

○ 소형농기계지원은 최근 5년 이내 지원사업 수혜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농기계 구입 즉시 공급대장 및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내구연한까지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.

○ 그럼에도, 2013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서 5년 내 지원받은 **2명에게 중복 지원**하였고 관리대상 55건 중 **12건에 대하여 미점검 및 관리대장 미작성** 등 사후관리 소홀

2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 추진 소홀

○ 농약살포시 중독위험이 높은 농가위주로 장비로 공급하되 면 자체 선정기준 및 자체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

○ 그럼에도, 2013년 안전장비 123조를 지원하면서 **선정기준과 자체심의회 없이 대상자를 부적정하게 선정**

3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사후관리 소홀

○ 보조사업자 선정은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준공 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은 군 승인 없이 매각, 대여, 교환, 담보제공 등 목적외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함.

○ 그럼에도, 2014년 **대상자 2명을 선정하면서 서면심의로 대체하여 불공정하게 선정**하였으며 사후관리 대상인 **12건에 대한 관리실태 미점검** 및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**15건에 대하여 부기등기 등 보안장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**

4 구제역·AI 방역관리 추진 소홀

○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농가 실명제 담당공무원을 지정 매월 2회 이상 담당 농가를 방문점검하고 주1회 이상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축산농가에 대한 일제점검 후 관련사항을 국가동물방역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**축산농가 56가구에 대한 방문점검 실적 미비 및 문자메세지 발송 미이행 등 업무 소홀**

○ 가축질병 차단방역 관련 소독약품은 자체 실정에 맞게 농가에 공급하고 약품 수령증을 받아야 함에도 **배부한 증빙자료 없이 임의 배부 및 인수증이 없는 등 업무 소홀**

5 어·패류 입식 및 출하신고 작성 소홀

○ 재해대비 및 해양수산기본통계자료 활용을 위해 양식장 관리대장을 작성·기록 관리하여야 함.

○ 그럼에도, **어·패류양식 156어가**의 관리대장의 입식현황은 기록되어 있으나 **출하현황은 미작성**되어 있는 등 업무 소홀

6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추진 소홀

○ 재활용이 가능한 해양쓰레기는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한 쓰레기만 위탁처리하여야 함에도 **종류별로 분리하지 않고 일괄 위탁처리**하였고,

○ 인부사역 시 만 60세 미만인자와 근로 계약하여 작업을 효율성을 도모해야 함에도 **연령을 초과한 51명을 부적정 채용**

7 해양수산 보조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소홀

○ 해양수산 보조사업으로 시설한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이를 기록·유지하여야 함.

○ **2011년부터 2014년 해양수산보조사업 시설 59건 중 36건**에 대하여 **관리책임자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는** 등 보조사업 사후관리 소홀

○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자산은 군 승인 없이 매각, 대여, 교환, 담보제공 등 목적외 사용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수산물 소형저온저장고 보조사업 **15건에 대하여 부기등기 등 보안장치를 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**

8 방치선박 실태조사 및 제거 소홀

○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저해 및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방치선박을 제거하여야 함.

○ 그럼에도, **2014년 방치선박 일제조사 세부 추진계획를 수립하지 않고** 원동항에 **폐선박 1척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제거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**

9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사항 – 회수 909천원

○ 주민불편해소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품목인 전복선별기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**부가가치세 950천원(보조909, 자담41)을 환급받지 않는 등 업무 소홀**

세 입 (6)

1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소홀 – 징수 6,936천원

○ 2010년부터 2014년까지 **재산대부료 7건 734천원과 공유재산변상금 2건 6,202천원 등 총9건 6,936천원이 체납**됨.

2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자료 누락 – 추징39,627천원

○ **취득세 72건 22,259천원**과 **재산세 713천원 과세 누락**

○ **2013년 종합감사 지적분 16,656,030원**에 대하여 **군 재무과로 과세요청**하였음에도 **감사일 현재까지 과세되지 않았고** 군외면은 지방세 프로그램등을 활용 **과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 방치**

○ 지방세 징수 현황은 **과년도 감사 지적 과년도 체납액 56,029천원과 현년도 체납액 46,272천원등 계 102,301천원이 체납**되어 **읍·면 순위가 11위로 저조**함에도 업무 소홀

3 등록면허세 과세누락 추징 – 추징 1,776천원

○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신규면허나 면허를 변경 받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, **2013년 종합감사 지적분 12건 72천원**과 **건축 및 어업 면허 87건 1,704천원 등 계 99건 1,776천원에 대하여 과세가 누락**되었음에도 징수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

4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 부과징수 부적정

○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는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 지체없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, 금융기관 영업이 마감한 후에는 다음날 즉시 납부하여야 함.

○ 그럼에도, 2013년과 2014년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28,660매 16,196천원을

부과·징수하면서 **16,800매 8,641천원을 누적 57일간 군금고 지연 불입**

5 제증명 수수료 부과징수 부적정

○ 제증명 수수료는 지체없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, 금융기관 영업이 마감한 후에는 다음날 즉시 납부하여야 함.

○ 그럼에도, 제증명 수수료 413건 11,527천원을 부과징수하면서 **284건 7,401천원을 누적 1,013일 군금고 지연 불임**

6 옥외광고물 수수료 부과징수 부적정

○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민원처리부 접수 후 내부결재를 득하고 수수료수입으로 지체없이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, 금융기관 영업이 마감한 후에는 다음날 즉시 납부하여야 함.

○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 191건 573천원을 부과·징수하면서 **42건 123천원 누적 110일간 군 금고 지연 불입**

○ 2013. 3. 14. ~ 4. 12.까지 부과·징수한 **9건 27천원**은 **인증기 증지수입으로 부적정 세입조치** 및 2013. 4. 13. ~ 2014. 10. 31.까지 부과·징수한 **182건 546천원은**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가 아닌 **증지수입으로 세입편성 과목 해소에 맞지 않게 세입 조치**

세 출 (6)

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

○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는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할 **이장 및 직원사기진작 급식비 2건 1,386천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**

○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는 **추석맞이 직원 선물비 950천원 부적정 집행**

2 민간실비보상금 과다 지급 – 회수 260천원

○ 사무관리비로 집행할 2014년 재경 향우회 한마음 축제 참석을 위한 버스임차료 1,200천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부적정 집행

○ 행사실비보상금 1,040천원을 집행하면서 공용차량 이용에 따른 **일비 1/2를 감액하지 않고 일비 520천원 전액 지급**

3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

○ 기관운영업무추진에 따른 물품 구입 **1건 1,638천원을 집행하면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미사용**

○ **직무활동 범위를 벗어난 여성단체 의류구입비로 220만원과 타읍면직원, 관내 일반인 축조의금으로 50만원 부적정 집행**

4 사무관리비(담당별 운영비)집행 부적정

○ 조합원 업무환경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건의로 읍면 부서운영비외 별도로 담당별 운영비 800만원(4개담당×200만원)을 반영하고 있음.

○ 그럼에도, **사업목적과 위반되게 총무담당 5,707천원**, 개발담당 944천원, 농수산담당 1,299천원 집행

5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– 회수 369천원(회수123+가산246)

○ 재택근무는 정산근무시간이 종료되고 3시간 연장근무하며 다음날 08:00까지 출근하여 청사 이상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재택근무자에게 수당으로 25천원을 지급하고 있음.

○ 그럼에도, 2013년 4일에 대하여 당직근무자에 재택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시 **당직근무시간과 중복된 시간에 대하여 감액없이 2명에게 123천원을 중복 지급**

6 특산물 판촉활동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

○ **민간인이 아닌 행정기관 군외면에 민간경상보조금**을 1차 200만원과 2차 300만원 등 계 **5백만원을 부적정하게 재배정**

○ 면민의 날 기념식 및 향우 고향방문의 날 행사시 향우들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하면서 민간경상보조금 200만원으로 특산품 구입

공 사 계 약 (2)

1 재배정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
○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」에 따라 일반공사는 10~20백만원 미만의 경우 94%, 10백만원 미만은 95% 낙찰율 적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.

○ 그럼에도, 재배정된 사업비 2,000만원을 **지구별 500만원씩 4개소 사업지구로 분할하여 낙찰율 적용없이 계약을 체결**하여 **분할발주하지 않고 낙찰률 적용 계약했을 경우 대비 군비 120만원을 과다 집행**한 결과를 초래함.

2 시설공사 검사·감독에 관한 사항 – 회수 1,736천원

○ "군외 ◈◉○ 배수로 정비공사" **흄관기초콘크리트 4.25㎥와 거푸집 8.5㎡을 미시공**하였음에도 준공처리 후 대가를 지급하여 **915천원 과다 지급**

○ "군외 ○◉● 마을안길 확포장공사" **전석 기초거푸집 11㎡ 미시공**하였음에도 준공처리 후 대가를 지급하여 **271천원 과다 지급**

○ "군외 ○△ 농로 확포장공사" **콘크리트포장 거푸집 10.5㎡ 부족시공과 옹벽 저판 철근 0.211톤 미시공**하였음에도 준공처리 후 대가를 지급하여 **550천원 과다 지급**

건 설 행 정 (3)

1 민방위 장비물자 관리 소홀

○ 비상시 즉시 활용해야 할 전자메가폰, 교통신호봉 등 **3종의 10개 물자를 포장도 제거하지 않은 채 창고에 적재 방치** 및 **현황판도 없이 허술하게 보관**

○ 매분기 장비물자 점검 후 **내구연한에 따라 노후장비는 정비**하고 **부족분에 대한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**

2 가설건축물 건축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

○ 「건축법」에 따라 건축허가·신고·변경·가설건축물·공작물설치등은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.

○ 그럼에도, 관행적으로 신축건축물이 아니라는 사유로 **2013년 28건, 2014년 31건 총 59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**에 대하여 **건축수수료 2,030천원을 부과 징수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**

3 도로점용공사 준공 확인에 관한 사항

○ 도로의 굴착이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공사를 마치면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함.

○ 그럼에도, **도로 굴착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된 2013년 7건, 2014년 1건**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**도로점용공사 준공확인 신청을 하지 않음에도** 감사일 현재까지 **400만원 과태료(건당 50만원) 처분을 하지 않는 등 업무 소홀**

7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사례

○ 우수사례(1)

군외면 미래비전 및 발전구상을 위한 지역리더 워크숍 실시

□ 추진배경

○ 완도대교 개통 이후 생활환경의 변화로 원동소재지 상권 하락하면서 지역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

○ 지역 리더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 필요

□ 주요 실적 및 성과

○ 일시/장소 : 2014. 7. 3. (목) 14:00~18:00 / 완도수목원 2층 세미나실

○ 주최/주관 : 군외면 / 명소IMC

○ 참석대상 : 지역리더, 기관단체장, 각마을 이장, 행정 등

○ 주요내용 : 오리엔테이션, 특강, 지역만들기

○ 추진성과

- 지역주민 및 리더의 역할과 이해 정립
- 동기부여 및 역량강화를 통한 주민주도형 사업가능성 발굴
- 미래비전 및 발전구상을 통해 참여의식 및 주인의식 고취
- 지역주민과 리더가 참여해 현실적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모색

□ 기대효과

○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 및 주민들의 역할과 이해 정립으로 군외면의 새로운 미래발전을 위한 비전 수립

○ 주민 참여 동기부여 및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개발을 실천하여 면민 화합 분위기 조성

○ 우수사례(2)

KBS목포방송국 희망나눔 봉사 추진

□ 추진배경

○ 전문가로 구성된 KBS목포방송국 희망나눔봉사대에서 섬으로 구성되어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된 우리지역을 방문하여 봉사활동 추진

○ 인적 네트워크(귀농 예술인)를 통하여 민간자원 연계 추진

□ 주요 실적 및 성과

○ 일시/장소 : 2014. 7. 19.(토) 10:00~16:00 / 군외면 게이트볼장 외 2개소

○ 주최/주관 : KBS목포방송국 희망나눔봉사대

○ 봉사인원 : 150명

- 현대삼호중공업, 동신대목포한방병원, 목포기독병원, 광주KBS, 인스튜디오, 미르치과, 전통차문화원, 젊은잎새봉사단 등

○ 주요내용 : 의료봉사, 점심(자장면) 제공, 커플·영정사진 촬영, 집수리, 전기공사, 이·미용봉사, 위안공연 등

□ 기대효과

○ 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·문화·인적 재원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 제고 및 소외감 해소 기여

○ 제도개선(1)

과 제 명	건축행정 합리적 운영 방안
현 황	○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할 건축물(「건축법」 제23조제1항) -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물 -「건축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건축물 -「주택법」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○ 건축사가 설계하지 않아도 된 건축물(「건축법」 제23조제1항 단서) -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·개축 또는 재축 -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-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※ 「건축법」 제20조에 따라 건축허가나 신고한 건축물 ○ 건축법령에는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요건을 법정화 하고 있으며, 수산업법령상 육상해수양식어업(종묘생산어업)은 허가기간이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
문 제 점	○ 완도군에서는 일반건축물 허가나 신고,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사무소에서 설계서 작성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민의 설계비 가중 및 가설건축물 허가나 신고를 기피하고 있음. ○ 육상해수양식어업(종묘생산어업) 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최소 5년 이상으로 타시군은 일반 건축물로, 우리군은 보온덮개 또는 차광망, 비닐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로 하고 있음. • 육상해수양식어업 건축물은 대부분 가설건축신고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「건축법」제20조제4항에 따라 건축설비,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규정 등을 적용 받지 않음에 따라, • 건축허가나 신고 시 건축설비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, 건축설비(배관, 저수조에 의한 누수)의 문제로 인근토지 등의 피해발생시 행정조치 불가한 실정임. • 또한,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(3년이내)과 어업허가 기간(5년) 불일치로 잦은 문제가 발생함.
개선방안	○ 건축사가 설계해야할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신고 요건의 명확화
기대효과	○ 주민편익 및 건축안전으로 주민피해 예방

○ 제도개선(2)

과 제 명	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정산방법 개선
현 황	○ 지원개요 - 운영비 : 경로당 월 6만원, 경로복지센터 월 60만원 - 특별난방비 : 11, 12, 1, 2, 3 (5개월), 개소당 150만원 - 냉방비 : 폭염기간 2개월, 개소당 10만원 - 양곡지원 : 연간 20㎏ 7포 ※ 연간 지원금 : 경로당 232만원, 경로복지센터 880만원 ○ 지원기준 - 운영비 : 공과금, 다과, 음료, 소모품, 회의시 소요되는 부식비 등 - 난방비 : 유류비, 전기료, 가스료 등 난방 소요비용 - 냉방비 : 전기료 등 냉방에 소요되는 공공운영경비성 경비
문 제 점	○ 보조금 집행 시 전용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농어촌 재래시장 이용 및 부과세 별도 등 카드사용을 꺼려함 ○ 경로당 대표계좌로 송금되어 지원기준 외 사용이 많음 - 중식비, 노인회 연회비, 경조사비 등 집행 불가항목 지출 ○ 집행기준 불이행시 지원 목적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여도 보조사업자(노인회장)의 비협조적 태도로 환수가 어려움. - 관련 공무원 및 제도에 불평불만, 민원 제기 우려가 큼.
개선방안	○ 현금 지원을 최소화하여 현금 지원분에 대하여만 정산 - 공과금, 동하절기 전기요금 등 군에서 일괄 납부 - 난방유, 가스 등 상품권(쿠폰)으로 유류비 지원 - 기타 유지·관리 소요비용만 노인회 지원 및 정산 ○ 군에서 운영비 지급 시 각 마을 노인회장 집행·정산 관련 집합교육 또는 읍면 순회교육 실시
기대효과	○ 경로당 운영비의 효율적 지원으로 사회복지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○ 정산방법 간소화로 담당자 업무 경감 및 노인회장 스트레스 완화

○ 제도개선(3)

과 제 명	복지지원 성격의 물품 등 지원시 결과보고양식 변경
현 황	○ 저소득층 물품지원사업(생일상 차려주기 등) 추진 후 군 결과보고시 전달사진 첨부토록 되어 있음
문 제 점	○ 본인 얼굴이 찍힌 전달 사진이 보고서류로 제출되는 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○ 인지할 경우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소송제기 가능성 높음 ○ 최근 온나라 시스템 개통에 따른 문서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 확산
개선방안	○ 전달 사진이 아닌 수령증으로 대체
기대효과	○ 개인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보호